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1. 9.(수)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 강영수(02-2100-2950)
	은행과	담당자	사무관 김기훈(02-2100-2953)
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 김준환 (02-3145-8020)
	은행감독국	담당자	팀 장 이종진 (02-3145-8030)

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 추진

- '23년 2분기부터 9개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-

주요 내용

- □ '22.11.9일 금융위원회는 9개 기업(핀테크8, 금융회사1)의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.
 - 동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.
- □ 한편,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'23.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시범 운영 성격을 감안하여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일부 제한*하였습니다.
 - * (은행)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% 內 (저축은행·신협)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3% 內

1 추진 경과

- □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「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」방안을 발표하습니다.
 - 플랫폼을 통한 예금 비교·추천 허용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.
- □ 위 방안의 **후속조치**로서 금융위원회 의결(11.9일)을 거쳐 **9개 기업**의 **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**로 지정하였습니다.
 - * 뱅크샐러드, NHN페이코, 줌인터넷, 깃플, 핀크, 비바리퍼블리카, 네이버파이낸셜, 씨비파이낸셜, 신한은행(핀테크 8, 금융회사 1)

2 |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세부내용

- □ (서비스 내용)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·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·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.
 - 특히,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소비자의 자산분석(예: 입출금 통장, 카드사용실적 등)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
- □ (규제 특례) 금융소비자보호법상 ①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, ②금융회사 -중개업자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 - ① 현재 대출, 보험,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*하고 있으나,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.
 - * (대출) 대출·신용카드 모집인, (보험) 보험대리점, 보험설계사, (금투) 투자권유대행인
 - ⇒ 정식 제도화 이전 **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**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**영위**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 - ②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**같은 유형의 금융상품**에 대하여 **둘 이상**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.
 - * (예외)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1사전속의무 적용 제외
 - ⇒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**다수 금융회사**의 **예·적금 상품을** 비교·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- □ (기대 효과)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·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·가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*가 가능해집니다.
 - * 마이데이터, 대출중개 서비스 등과 연계로 원앱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이용 가능
 - **중소형 금융회사**(지방은행, 저축은행 등)의 경우 **플랫폼 기업**과의 **제휴**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**수신영업 채널 확대**가 가능해집니다.

3 리스크 관리방안

- □ (출시 시점)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출시시점을 '23.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*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* (예) '23.4월부터 시스템 개발현황 및 금융회사 제휴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 → 서비스 안정성·적정성 점검(1~2개월) → 금감원 협의 완료 후 서비스 출시('23.6월, 잠정)
 -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,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출시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<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진행시 고려사유 >

- 서비스 출시에 **상당기간**이 **소요**(시스템 개발, 금융사 제휴 등)되는 만큼 **신청기업**의 ①원활한 서비스 준비 및 ②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 측면에서 기존 발표 일정대로 신속하게 심사 진행
- 다만, 최근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출시시점을 '23.2분기 이후로 협의 하도록 부가조건 부과
- □ (모집 한도)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**감안**하여 **수신**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하였습니다.
 -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·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①은행은 5% 이내, ②저축은행·신협은 3%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.
 - *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하여 3~5% 이내로 관리할 필요 ** 추후 서비스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모집 한도 확대 여부 검토 예정
- □ (소비자 보호) 공정한 비교·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알고리즘 사전 검증, ②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③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.

4 향후 계획

- □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**추가 신청기업***에 대해서는 **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**에서 **심사를 진행**할 계획입니다.
 - * 신용카드사,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서 제출



